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과학기술처 설치〉

■ 이해민·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34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민 · 이주희 · 이병진 · 김선민 · 모경중 · 박정현 ·
김 윤 · 남인순 · 문진석 · 송재봉 · 이용우 · 김준혁 ·
김남희 · 최혁진 · 조인철 · 박은정 · 신장식 의원(17인)

2. 제 안 일 : 2025. 11. 25.

3. 회 부 일 : 2025. 11. 26.

※ 의안번호 : 1453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과학기술처법안¹⁾」(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이하 “과학기술처”)를 설치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등 과학기술처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4(국회기록원) (생략)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생략)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 바. (생략) <u><신 설></u> <u>사. ~ 자.</u> (생략) 2. ~ 17. (생략) ② (생략)	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과학기술처를 둔다. ② 국회과학기술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과학기술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5(국회기록원) (현행 제22조의4와 같음) 제22조의6(국회세종의사당) (현행 제22조의5와 같음)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아. ~ 차.</u> (현행 사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2.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국회과학기술처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과학기술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안 제22조의4는 과학기술처의 설치근거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 등 기존 국회 소속기관과 동일한 입법 체계²⁾에 따라 「국회법」에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37조제1항제1호 사목은 국회 소속기관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처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기존 국회 소속기관에 관한 규정과의 문언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³⁾

2)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문 의 처

02)6788-5016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①·② (생 략)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u>얻어</u>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과학기술처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u>받아</u>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과학기술처에 <u>관한 사항은</u> 따로 법률로 정한다.